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mailto: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분석

### 최세균\* 어명근\*

1. 머리말
2. 기본관세율 체계
3. 양허관세율 체계
4. 원료와 가공식품간의 역관세
5.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개편 방향

#### 1. 머리말

관세는 법령에 의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 나라 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 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세가 조세로서의 성격과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관세율과 부과기준 및 범위를 적용하는데 따라 수입규모와 종류 및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산업정책적 성격도 갖는다.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산업유인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며 산업유인정책 가운데 관세정책은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국제화와 개방화 과정에 있으며 관세장벽의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세인하와 관세양허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관세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기능(또는 시장기능) 조절에 의한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국정관세(기본관세, 잠정관세, 관세환급, 각종 탄력관세 등), WTO 양허관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도입된 관세상당치(Tariff

\* 부연구위원

Equivalent, TE)와 종량세 등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농업과 식품 산업간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와 역관세(역누진관세, Reverse Tariff Escalation), 균등관세 제도와 차등관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sup>1</sup>. 또한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단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와 농업과 식품 산업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적절한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열 일곱 차례에 걸친 관세율 개정과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를 통해 평균 관세율을 인하하고 산업간 균등관세율 체제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관세율 개편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농업보호론과 비교우위론 또는 농업개방론이 대립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박상태, 1996, 225쪽). 이러한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농가소득 작물의 경우 높은 관세를 유지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의 관세는 낮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기타 농산물의 관세는 서서히 인하되어 왔으며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농산물과 사치성 농산물의 관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관세정책에 의해 일부 기초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기초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대부분 낮은 관세율(8% 중심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공식품 산업은 일부의 주장과 같이 역관세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가 취약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양면을 고려하여 완제품과 원료의 관세율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연구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고 현행 관세율 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관세율 가운데 중심이 되는 기본관세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일부 품목의 수입에 부과되고 있는 양허관세율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효보호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실효보호율 계산은 역관세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가공식품에 한정하였으며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일부 품목만 분석되었다. 조사된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국들의 가격, 관세율, 기본관세율 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sup>1</sup> 누진관세 제도란 원료보다 그 가공품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거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상품은 싼값에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생산비를 낮게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완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관세는 그와 반대되는 형태로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는 제도이다. 균등관세는 모든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차등관세는 품목간 관세율에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차등관세가 곧 누진관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2. 기본관세율 체계

### 2.1. 우리 나라 관세제도의 변화

우리 나라 근대적 의미의 관세제도는 1876년 개항(開港)이후 대외통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는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종가세 위주의 관세정책을 운영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구한국 관세체계를 모두 철폐하고 한일통일관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정부수립과 아울러 정부는 일제시대의 관세제도를 모두 정비·통합하여 하나의 관세법과 부속세율표로 묶어 1949년 발효하였다. 1949년 관세법은 과거의 협정세율과 식민지 관세로부터 국정관세체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은 일률종가세로 책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1949년 관세법 채택 후 1957년 처음으로 대폭적인 관세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산업보호 관세기능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평균관세율은 26%에서 31%로 인상되었으나 종가세 원칙은 유지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와 단순가공·조립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보호에 역점 두고 관세정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관세제도의 특징은 산업보호와 재정관세적 성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평균관세율을 30~39%로 높게 유지되었다.

1970년대 관세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1976년 관세율 개편에서 과다보호와 과소보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심세율 20% 적용 품목의 비중을 높였으나 1978년에는 다시 차등관세율제도를 도입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에 0~30%의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측면보다 산업보호와 수입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1980년대 이후 관세제도의 특징은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의 이행과 평균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고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1984~1988년)와 2차(1989~1993년) 관세인하예시제를 시행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산업간 균등관세율체계(Uniform Rate System)를 도입하여 그 기초를 유지해오고 있다.

관세인하예시제는 관세의 저세율화, 균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산업계의 사전대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제1차 관세인하 5개년계획으로 0~100%까지 복잡다기한 관세구조는 20% 중심세율로 점진적으로 단순화되었다. 전체 평균관세율은 1983년 23.7%(농산물은 31.4%)에서 1988년 18.1%(농산물은 25.2%)로 인하되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지만 주소득 작목의 관세는 1983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관세 이외의 비관세조치에 의해 수입이 조절되는

식량(쌀, 보리, 밀 등)의 관세는 5%로 하고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에 대해서는 1988년까지 10%의 저세율로 균등화시켜 식품가격과 사료가격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제2차 관세인하 5개년계획은 제1차 계획에서 목표로 한 균등관세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심관세율 20%를 1993년에 OECD국가 수준인 8%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추진되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가 소득작물과 그 대체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만성적 할당관세 및 잠정세율 품목 등 278개 품목은 1988년의 관세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농업투자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사치성 식품 등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특히 국내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두유, 후추, 설탕 등의 관세를 1988년의 20%에서 1993년 8%로 인하하고, 초콜릿은 동기간 중 관세를 30%에서 8%로 인하하였다.

## 2.2. 기본관세율 구조

### 2.2.1. 기본관세율 분포

기본관세(General Tariff)는 관세주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국정관세의 하나이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율 이외에 잠정관세율(Temporary Tariff), 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은 관세율표(Tariff Schedules of Korea)에 “기본(General)”으로 표시하고 있다. 쿼타 물량의 수입,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 등은 기본관세가 양허관세보다 낮은 경우 기본관세가 적용된다.

기본관세율의 높고 낮음은 중심세율 8%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세율이 중심세율보다 낮은 5% 이하의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관세율이 30%를 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산물과 식품이 25% 이하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품목이다. 특히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사료곡물과 박류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종자는 대부분 0% 세율이 적용되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심세율인 8%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과수묘목, 구근류, 종마 등 농업용 자재 이외에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묘목류와 구근류, 종마 등은 채소종자, 곡물종자, 과수종자, 종축(말 제외) 등 다른 농업용 자재보다 높은 세율은 적용 받고 있다.

관세율 30%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 및 그 종자(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이다. 높은 관세율인 40~5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이상 40%의 관세 부과)와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주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이다. 이들 품목

의 특징은 국내 생산이 많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기본관세율 분포로 볼 때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는 산업보호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량으로 수입되는 옥수수, 대두 등의 시장접근 물량에 대하여 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낮은 관세가 발작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료곡물과 박류도 5%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축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관세에 의한 높은 산업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용 종자, 종축은 0% 세율이 적용되어 농업보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단일관세율 체계와 관세인하 정책으로 가공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중심세율 8%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 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이 8% 중심세율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참기름, 들기름, 유채유, 낙화생유 등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관세율 5% 이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당류, 팜유, 코코아페이스트 등 가공식

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가공식품 가운데 3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도 많지 않다.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 일부 품목이다.

기본관세율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0~50% 사이에 분포하나 농산물은 어느 단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농업용 원료의 관세는 낮은 반면 국내 공급이 가능한 경쟁 품목의 관세는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의 관세는 8% 중심세율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0%에서 350%의 고율관세까지 관세율 분포폭이 넓으나 주로 25% 이내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EU도 관세율이 50% 이하이며 25% 이내에 주로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 2.2.2. 기본관세율의 종류와 단계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은 12단계로 되어있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관세의 단계가 많은 것은 소수점 이하까지 관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품목간 누진관세 체계유지를 통한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단계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표 1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분포(1998년)

세율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0%	종자	종자	종자	종축, 수정란		
1%				양모		면
2%				원피, 누에고치		커피와 코코아두(볶지않음), 아마
3%	귀리, 메밀			돈지, 우지	팜유, 아자유 당밀	면실, 사탕무당, 사탕수수당
5%	밀, 보리, 옥수수, 쌀, 대두, 곡물가루(밀/쌀/옥수수/보리), 박류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8%	밀/옥수수/감자/고구마 전분		과수묘목	말, 종마, 의약품제조용, 동물성생산물(우황, 사향 등)	대두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마가린, 옥수수유, 당류, 두부, 식물성유지, 설탕과자, 캔디류, 면류, 라면, 초코렛, 초코렛과자, 콘칩, 콘플레이크, 빵, 인스턴트면류, 케첩, 조제식료품, 비스킷, 쿠키, 토마토페이스트, 인스턴트커피, 장류(간장/된장/고추장), 마요네즈, 기타음료, 인삼음료, 과즙음료	구근류, 계피, 기타 산 식물, 식물의 잎, 가지, 커피(볶음), 곡물의 짚, 껍질
10%						주정(조주정)
20%	매니옥 고구마	생강		소, 가금류, 양, 돼지, 탈지분유, 유장, 천연꿀, 녹용	유당 조제저장처리버섯 조제저장처리두류	인삼, 인삼정, 인삼액즙, 액스, 잎담배
25%					해바라기씨유	절화류 해바라기씨
30%	맥주맥, 맥아, 유채, 호프, 채두류(녹두, 팥, 완두, 강남콩 등), 채두류 종자	감자, 양배추, 배추, 당근, 무, 오이류, 채두류, 버섯류, 호박, 냉동채소, 건조채소, 일시저장처리채소, 건채두류	코코넛, 아몬드, 잣, 헤즐넛, 은행, 바나나, 파인애플, 일시저장처리과실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조란, 식용설육	유채유, 소시지, 조제저장처리육, 조제저장처리채소, 채소쥬스, 수프, 브로드, 맥주, 포도주, 위스키, 소주, 약주	
40%	낙화생, 참깨, 들깨			밀크와크림, 전지분유, 치즈, 버터밀크, 버터	참기름, 들기름	녹차, 홍차, 필터담배
50%		토마토, 양파, 마늘, 상차, 고추류	호도, 밤, 감귤, 오렌지, 포도, 수박, 멜론, 배, 사과, 복숭아, 자두, 감, 건조과실	돼지고기	조제저장처리토마토 오렌지/포도/사과/복숭아/딸기쥬스	

자료: 농림부, 농림산물 품목분류(1998. 1.)

표 2 주요국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를 분포(1998년)

국 가	세율단계	세 율 분 포 (%)	관 세 종 류
한 국	12단계	무세, 1, 3, 5, 7, 8, 10, 20, 25, 30, 40, 50	증가세
미 국	94단계	무세, 0.1~25(소수 첫째자리까지 세분), 28, 31.5, 139.5, 173.4, 350 등	증가세, 종량세 증가종량병과세, 증가종량선택세
일 본	50단계	무세, 2~20(소수점 이하까지 세분), 25, 28, 30, 35, 40, 50	증가세, 종량세 증가종량병과세, 증가종량선택세
E U	34단계	무세, 2~26%(일부 소수점이하 존재), 30, 32, 42	증가세, 종량세 증가종량병과세, 증가종량선택세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년)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한국은 농산물 및 식품관련 기본관세를 증가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전체 세 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필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가세만을 부과하고 있음). 단일 과세방식은 특히 농산물과 같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교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증가세 이외에 종량세, 증가종량병과세, 증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3. 양허관세율 체계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수많은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은 관세율의 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 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증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증가종량선택세

는 종량세와 증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 사이에 분포하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sup>2</sup>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sup>2</sup>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부표 1).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우리 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수요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일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 4. 원료와 가공식품간의 역관세

### 4.1. 관세율 분포로 본 역관세

원료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비교하여 관세의 누진성(Escalation)이나 역누진성 또는 역관세(Reverse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을 조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료농산물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특성상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역관세체제로 운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기본관세율이나 양허관세율 분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관세율 분포를 제품별로 비교해 본다는 것은 역관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기본관세와 양허관세의 분포를 중심으로 역관세의 가능성을 판단한 후 역관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실효보호율 추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한다.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역관세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중심세율 8%를 적용 받는 가공식품 가운데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역관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유제품과 과채류, 견과류 등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원료에 비해

표 3 농산물 및 식품의 양허관세율 분포(1998년)

관세율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0~10%	밀(사료/제분), 박류	종자	종자	가금류, 종계, 원피, 동물정액	과즙음료	
11~20%	밀(듀럼), 밀가루, 귀리		과수묘목	말, 우지, 의학용 동물성 생산품	인삼타브렛 인삼분	산식물
21~30%	유채	배추, 양배추, 오이류, 채두류, 냉동채소	은행	종돈, 돼지, 돼지고기, 돈지, 닭고기, 조란(닭이외), 종란	낙화생유, 대두유, 팜유, 옥수수유, 당류, 소시지, 마가린, 빵, 캔디류, 비스킷, 쿠키, 설탕과자, 초코렛, 조제식료품, 코코아페이스트	구근류, 인삼정
31~40%		건채두류		치즈	해바라기씨유, 초코렛초코렛과자, 토마토페이스트, 조제저장처리채소, 조제저장처리채두류	녹용, 절화류, 커피(볶음)
41~50%	호프	버섯류, 토마토, 당근, 무	포도, 사과, 파인애플, 호도, 딸기, 자두, 레몬과라임, 아몬드, 코코넛	쇠고기, 밀크와 크림, 냉동크림, 조란(닭), 소	들기름 포도/사과주스 연유, 유채유	
51~60%	전분(밀)	들깨 건조채소	수박, 멜론		조제저장처리(돈육), 오렌지주스, 면류, 인스턴트면류, 장류, 케첩, 인스탄트커피, 조제저장처리과실, 채소주스	커피(안볶음)
61~70%			배, 복숭아, 단감		레몬/복숭아/딸기주스, 두부	홍차, 일담배
71~80%			오렌지, 감	유장	조제저장처리(닭고기/쇠고기), 포도주, 맥주	
81~90%						필터담배
91~100%			바나나	버터밀크, 버터		
101~200%		양파	감귤			
201~300%	전분(옥수수/고구마), 낙화생	고추류	밤	탈지분유, 전지분유, 천연물		인삼류(수삼/백삼)
301~400%	겉보리, 옥수수(종자포함)	감자(종자포함), 마늘				
401~500%	고구마, 팥, 전분(감자)	생강				
501~600%	대두, 맥주맥, 귀리(종자)					녹차
601~700%	녹두, 녹두종자참깨, 옥수수(팝콘용)		대추		참기름	
701~800%						
801~900%	기타곡물의 분					홍삼
901~1000%	매니옥					

자료: 농림부, 농림산물 품목분류(1998. 1.)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게 나타나 역관세체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과실류와 그 가공품은 기본관세율의 경우 원료와 1차가공품은 균등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차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곡물류는 원료 농산물의 기본관세율이 중심세율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곡물류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역관세 가능성이 낮다. 주요 원료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이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는 육류와 육가공품, 과일과 과일 가공품 등도 역관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표 1).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의 역관세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많은 품목들에서 발견된다. 곡물류의 경우 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곡물이 곡물가공품과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실가공품은 1차가공품 및 2차가공품 모두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표 3).

## 4.2. 실효보호율로 본 역관세

### 4.2.1. 실효보호율 추정방법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많고 이러한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서로 다를 경우 명목관세율(또는 명목보호율)에 의해서 역관세를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관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효보호율의 개념이 이용되고 있다. 명목보호율이란 어떤 재화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국내 가격과 국경가격과의 차이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비관세장벽이 없고 관세장

벽만 있으며 관세가 예외 없이 부과된다면 명목보호율은 관세율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나 관세부과의 예외와 쿼터, 수입허가제, 각종 특별법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법정관세율보다는 실적관세율 또는 잠재관세율 등이 더 적절한 명목보호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효보호율 추정에 기초가 되는 명목보호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하여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양허관세율이 실제로 수입에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보호율이 현실성 있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완제품과 중간재(원료) 수입에 있어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 초과물량의 수입은 많지 않다.

실효보호율은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주어진 보호체제로 인하여 그 산업의 산출물을 한 단위 생산함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부가가치를 VA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1) \quad VA_j^*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 P_j^* (1 - \sum_i a_{ij}^*), \\ & \quad i, j = 1, 2, \dots, K \end{aligned}$$

여기서,  $Q_j^*$  는  $j$  상품의 생산량,  $P_i^*$ ,  $P_j^*$  는 각각  $i$  상품과  $j$  상품의 가격,  $Q_{ij}^*$  는  $Q_j^*$  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i$  상품의 소요량,  $a_{ij}^*$  는  $j$  재를 1원어치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i$  상품의 투입액,  $K$ 는 교역재의 수, \*는 관세부과 이전을 나타낸다.

국내가격하에서의  $j$  상품의 단위당 부가가치는 국내가격이 관세를 부과한 후의 가격이므로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가 된다. 투입-산출 체계가 불변이므로  $\frac{Q_{ij}}{Q_j} = \frac{Q_{ij}^*}{Q_j^*}$  이고  $P_j = P_j^*(1 + t_j)$ 가 된다. 여기서 상첨자 \*가 없는 것은 관세부과 이후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2) \quad VA_j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 P_j^* (1 + t_j) [1 - \sum_i \frac{Q_{ij}^* P_i^* (1 + t_i)}{Q_j^* P_j^* (1 + t_j)}] \\ &= P_j^* (1 + t_j - \sum_i a_{ij}^* (1 + t_i)), \\ & \quad i, j = 1, 2, \dots, K \end{aligned}$$

여기서,  $t_i, t_j$ 는 각각  $i$  상품과  $j$  상품의 명목 관세율(또는 보호율)을 나타낸다.

식(1)과 식(2)에서 실효보호율  $Z_j$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3) \quad z_j &= \frac{P_j^* (1 + t_j - \sum_i a_{ij}^* (1 + t_i))}{P_j^* (1 - \sum_i a_{ij}^*)} - 1 \\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end{aligned}$$

#### 4.2.2.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관세율 분포를 중심으로 판단한 역관세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제품별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과실류를 원료로 한 과즙음료, 건과류와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류 등 21개 제품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 주

요 제과업체 및 식품업체로 L1, L2, O, D, N, G 등 6개 회사이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명목보호율은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명목보호율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국내외 가격차 변화가 심해 본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동안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일부에서 원료농산물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보호율도 추정하였으나 현실성이 낮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추정한 21개 제품의 실효보호율은 15개 제품에서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난 제품은 캔디, 초콜릿, 배음료, 포도음료(C, D), 아이스크림, 딸기음료, 커피메이트 등으로 앞에서 검토된 명목보호율 구조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실효보호율과 명목보호율이 비슷한 제품은 새우칩, 쿠키, 홍차음료 등으로 명목보호율이 완제품보다 낮거나 동일한 원료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효보호율은 일부 과즙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공식품의 양허관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공식품의 명목보호율은 기본관세율을 사용하고 원료농산물의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을 추정

표 4 가공식품 제품별 실효보호율\*

단위: %

품 목	보호율 기본세율	양허세율 (98)	실 효 보 호 율			
			기본/기본	양허/기본	기본/양허	양허/양허
캔 디	8.0	25.9	-6.2	46.0	-30.9	21.3
껌	8.0	25.9	3.1	55.4	-9.0	43.2
초코렛과자	8.0	34.5	-17.5	59.8	-44.5	32.8
아이스크림	8.0	30.2	-22.2	42.6	-85.7	-20.9
새우칩(과자)	8.0	25.9	6.8	59.0	-17.7	34.5
초코칩쿠키	8.0	34.5	7.3	84.6	-3.1	74.2
케 찹	8.0	57.6	3.3	125.7	-24.0	98.3
홍차 음료	8.0	34.5	7.7	47.8	7.2	47.3
배 음 료	8.0	9.6	-6.8	-4.3	-8.4	-5.9
캔 커 피	8.0	9.6	7.1	73.5	-3.2	63.2
포도음료 A	50.0	48.0	67.5	62.7	69.5	64.7
포도음료 B	50.0	48.0	59.2	55.4	60.5	56.7
포도음료 C	8.0	9.6	-5.4	-2.4	-6.6	-3.5
포도음료 D	8.0	9.6	3.4	6.2	-8.7	-6.0
오렌지음료 A	57.6	57.6	63.6	63.6	63.6	63.6
오렌지음료 B	57.6	57.6	62.7	62.7	62.7	62.7
오렌지음료 C	57.6	57.6	74.5	74.5	72.2	72.2
파인애플음료	50.0	64.2	75.0	105.9	66.7	97.5
당 근 쥬 스	8.0	9.6	0.3	2.9	-9.9	-7.2
딸 기 쥬 스	8.0	9.6	3.2	5.9	-7.5	-4.7
커피크리머	8.0	57.6	0.7	120.0	-14.1	105.1

\*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인 경우가 많아 원료와 완제품 모두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된(기본/기본으로 표시)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주: 1) 양허세율이 없는 경우는 기본세율을 양허세율로 적용하였음.
- 2) 기타로 처리된 중간재는 기본세율, 양허세율 모두 8%로 계산하였음.
- 3) 기본/기본은 완제품과 원료에 적용된 명목관세율이 모두 기본관세율을 의미하고 기본/양허는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며 원료에 적용된 명목관세율은 양허관세를 의미함.

하면 14개 제품이 음(-)의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료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 분포를 통한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의 역관세 가능성은 실효보호율 추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비록 일부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이기는

하지만 관세율 분포에서 역관세의 가능성이 나타난 품목들 대부분이 실제로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효보호율이 추정되지 않은 다른 가공식품의 역관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 5.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개편 방향

### 5.1. 관세체계 개편 방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관세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 관세율 구조개편 시기에 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관세정책의 산업정책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세율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WTO 주도로 시작될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관세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관세율구조 개편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구조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개편과 조정에 관한 논의는 관세협상력 유지라는 측면과 산업보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양허세율의 인하나 대폭적인 관세율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 주도로 시작될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관세협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관세율 조정 및 관세체계 개편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본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식품 관련 관세율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정책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관세율구조가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가운데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확실적인 해답은 없다. 국별 경제구조, 산업별 차이,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별로도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그러한 산업은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에 대하여는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산업을 보호하는 누진관세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관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단일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정도밖에 없다(박상태, 1996).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부표 3, 4).

조사된 가공식품과 원료의 관세율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이 많다. 우리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과 EU가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누진관세와 역관세가 혼재하고 있다. 토마토 관련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제품, 초콜릿, 비스킷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부표 3).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관세율의 인상보

다는 관세단계의 확대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통해서도 누진관세 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투입요소와 원료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관세 인상, 또는 이들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 등이 있다. 관세체계가 누진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농업 투입요소와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관세율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세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율 단계를 확대하고 과세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고 차등관세 제도 도입 및 관세 종류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관세율 단계가 많게는 94단계에 이르나 우리 나라는 12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도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가 종가세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에 반해 선진국들은 농업보호를 위해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관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에 대한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저가품의 범람을 방지하고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종량세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셋째, 관세정책에 의해 산업보호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을 위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종자 및 원료농산물의 관세는 형평성과 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투입재로서의 농산물이나 농자재의 관세율은 대부분 0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묘목류, 구근류, 산동물 등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현행 8% 관세율하에서 국내산업이 관세과잉(Tariff Redundancy) 상태를 나타내는 분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관세인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인상이 필요한 분야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경쟁국들의 관세 수준, 국내외가격차, 자급률, 양허관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급률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한 품목은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2.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관세체계 개편은 문제가 되는 몇몇 품목의

관세율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행해온 관세정책의 기초를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과 일부 가공식품의 예에 비추어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균등관세정책의 문제점과 이러한 균등관세체계 속에서도 일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역관세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관세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종합적인 관세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관세의 재정적 기능, 자원배분 기능,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도 관세 인상은 인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 물가상승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관세가 인상된 품목의 국내가격 상승은 생산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투입재 수요증가, 생산요소 재배분, 대체효과에 따른 대체재 생산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생산과 자원재배분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인상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APEC은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현재수준 이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Standstill”을 선언해 놓고 있다.

관세 인상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관

세 인하는 생산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소비자 후생 감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세인상을 가격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통한 품질 향상, 공급능력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세 인하로 발생하는 생산감소와 생산자 후생 감소는 관세 인하로 이익을 보는 계층을 고려한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통해 자원의 유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dead weight loss)의 최소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광석, 홍성덕. 1982. 3. 「명목 및 실효보호율구조의 장기적 변화」, 연구보고서 82-02,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수, 안종석. 1994. 5.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4-03, 한국조세연구원.

박상태. 1996. 「관세정책요론 :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이춘삼, 한규영. 1991. 「국제관세제도론 : 이론과 실무」, 동성사.

최낙균, 신현수. 1993. 1.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제258호, 산업연구원.

관세청. 1998. 5. “관세정책 운영 방안,”

농림부. 1998. 1. 「농림산물 품목분류」.

Corden, W. M., 1971.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Balassa, B., 1965.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PE, pp.573-594.



부표 1 양허관세율과 기본관세율 분포(2004년)

품 목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02류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가공육류
04류 낙농품	탈지, 전지분유, 버터밀크, 유장분말, 버터, 천연꿀		밀크와크림, 요쿠르트, 치즈
06류 수목, 화훼류	구근류, 묘목류, 화훼류, 절화류		
07류 식용채소	감자, 양파, 마늘, 당근, 무, 오이류, 버섯류, 건조채소류, 녹두, 팥, 매니옥, 고구마		토마토, 쪽파, 배추, 상치, 완두, 콩, 호박, 냉동채소류
08류 식용과실 및 견과	코코넛, 캐슈넛, 아몬드, 밤, 잣,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감, 대추, 매실	오렌지	호도, 레몬과라임, 포도, 수박, 멜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딸기
09류 커피, 차	커피, 녹차, 홍차, 고추류, 계피, 카레		
10류 곡물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수수, 메밀		밀(종자/사료/제분용)
11류 제분, 전분	곡물가루, 곡물분쇄물, 조분, 곡물펠리트, 가공곡물, 전분		밀가루
12류 채유용종자	대두, 낙화생, 참깨, 들깨, 호프, 인삼류, 약용식물	채소종자등(무세)	유채
13류	인삼류(홍삼정)	인삼정, 인삼액즙	
15류 유지류	낙화생유, 유채유, 옥수수유, 참기름, 마가린, 쇼트닝		대두유, 면실유, 들기름, 해바라기씨유
16류	가공육류		소시지
17류 당류, 설탕과자	사탕수수당, 유당, 당류, 추잉껌, 캔디류, 드롭프스, 캐러멜, 설탕과자		
18류 코코아	코코아두, 코코아페이스트, 초코렛및초코렛과자		
19류 곡물 조제품	국수류, 콘플레이크, 빵, 비스킷, 크래커, 파이		
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	조제저장처리 채소류, 토마토페이스트, 김치, 조제저장처리 버섯류, 조제저장처리 두류, 오렌지/토마토/복숭아/딸기/채소쥬스	쪽파(조제저장처리)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포도/사과쥬스
21류 기타조제	인스탄트커피, 케첩, 장류, 마요네즈, 두부, 과즙음료		
22류 음료알콜	박류	포도주, 청주, 약주, 탁주, 위스키, 럼주, 보드카, 소주	
23류	배합사료(어류용)		배합사료(양계, 양돈, 축우)
24류	잎담배, 필터담배		

자료: 대한민국정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 1994. 3.

부표 2 가공식품의 경쟁국간 관세율 비교(1998년)

단위: %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토마토 관련제품	2103.20.1000	토마토케첩	8.0	6.5	25.0	30.0	20.0
	2103.20.2000	토마토소스	8.0	6.5	20.0	30.0	20.0
유지 관련제품	2103.90.9010	마요네즈	8.0	6.8	12.8	30.0	20.0
	1517.10.0000	마아가린	8.0	13.4 ¢/kg	35.0	40.0	25.0
초코렛 관련제품	1806.20.1000	BULK 초코	8.0	4.5	28.0	12.0	12% + EA
	1806.31.1000	SHELL 초코	8.0	6.1	10.0	12.0	12% + EA
	1806.32.1000	핀초코	8.0	5.0	10.0	12.0	12% + EA
	1806.90.1000	기타초코	8.0	55.9 ¢/kg + 6.3%	10.0	12.0	12% + EA
비스킷	1905.30.1000	스위트비스킷	8.0	FREE	24.0	25.0	13% + EA
	1905.90.1040	비스킷, 쿠키및크래커	8.0	FREE	24.0	25.0	13% + EA
커피	2101.12.1000	인스탄트커피	8.0	10.0	12.3	50.0	30.0
겉	1704.10.0000	츄잉겉	8.0	4.3	30.0	15.0	8% + Ecu 34.8/100kg
빙과류	2105.00.1010	아이스크림	8.0	20.0	28.0	45.0	12% + Ecu 28.0/100kg
	2105.00.1090	기타 아이스크림	8.0	20.0	28.0	45.0	12% + Ecu 28.0/100kg
	2105.00.9010	기타 빙과류	8.0	18.0	35.0	45.0	12% + Ecu 28.0/100kg
	2105.00.9090	기타 빙과류(기타)	8.0	18.0	35.0	45.0	12% + Ecu 28.0/100kg
캔디류	1704.90.2010	드롭프스	8.0	6.1	35.0	15.0	13% + EA
	1704.90.2020	캐러멜	8.0	6.1	35.0	15.0	13% + EA
스낵류	1905.30.2000	와플과 웨이퍼	8.0	FREE	30.0	25.0	13% + EA
	1905.90.1050	미과	8.0	FREE	35.0	25.0	13% + EA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

부표 3 원료와 완제품의 관세율구조 국제 비교(1998년)

단위: %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토마토 관련제품	2103.20.1000	토마토케찹	8.0	6.5	25.0	30.0	20.0
	2103.20.2000	토마토소스	8.0	6.5	20.0	30.0	20.0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	8.0	12.3	20.0	25.0	18.0
	2002.10.0000	조제, 저장처리한전체 나 조각상의 토마토	50.0	12.3	9.6	25.0	18.0
	2002.90.9000	조제, 저장처리한 토마토	50.0	13.2	9.6	25.0	18.0
유 지 관련제품	2103.90.9010	마요네즈	8.0	6.8	12.8	30.0	20.0
	1517.10.0000	마아가린	8.0	13.4 ¢/kg	35.0	40.0	25.0
	1514.10.1000	유채유(조유)	30.0	FREE	¥17/kg	100.0	5.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조유)	25.0	1.8 ¢/kg +3.6%	¥20.7/kg	91.2	5.0
초코렛 관련제품	1806.20.1000	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8.0	4.5	28.0	12.0	12%+EA
	1806.31.1000	셸초코	8.0	6.1	10.0	12.0	12%+EA
	1806.32.1000	핀초코	8.0	5.0	10.0	12.0	12%+EA
	1806.90.1000	기타초코	8.0	55.9 ¢/kg +6.3%	10.0	12.0	12%+EA
	1702.11.1000	유당	20.0	7.6	10.0	35.0	Ecu 21.8/ 100kg
	1805.00.0000	코코아 분말	5.0	0.82 ¢/kg	12.7	40.0	12.0
	1516.20.2090	기타(정제가공유지)	8.0	9.5 ¢/kg	4.0	40.0	12.0
커피 관련제품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	8.0	10.0	12.3	50.0	30.0
	0901.21.0000	커피(볶음/카페인)	20.0	FREE	20.0	35.0	15.0
	0901.22.0000	커피(볶음/디카페인)	20.0	FREE	20.0	35.0	15.0
	3501.10.0000	카세인	20.0	0.39 ¢/kg	FREE	10.0	2.0
	3501.90.1000	카세인염 및 유도체	20.0	0.39 ¢/kg	6.4	10.0	13.0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년)

부표 4 일본의 누진관세율 체계

단위: %

산 업	품 목 수	평균관세율	세 율 범 위	표 준 편 차
기초생산물				
농축산물	373	12.2	0-923.3	67.4
임산물	40	3.3	0-23.8	5.6
목재	37	0.1	0-4.1	0.7
수산물	134	5.8	0-15	3.8
석탄류	9	0.0	0-0	0.0
원유와 가스	4	0.7	0-2.9	1.4
금속	28	0.0	0-0	0.0
광물	84	0.1	0-3	0.4
가공생산물				
식품가공				
1 차가공	32	35.1	0-781.6	136.6
2 차가공	26	36.1	4.3-85.7	17.7
완 제 품	202	64.5	0-709.2	146.3
음 료				
완 제 품	58	26.0	0-90.2	22.1
섬 유 류				
1 차가공	64	12.5	151.3	40.8
2 차가공	1,187	7.5	0-16	2.6
완 제 품	596	9.9	0-17.9	4.2
의 류				
완 제 품	275	12.0	3.4-18.5	3.3
가족제품				
1 차가공	1	3.4	3.4-3.4	...
2 차가공	86	16.8	0-48.8	16.4
완 제 품	43	12.3	3.2-20.8	6.2
나무제품				
1 차가공	5	0.0	0-0	0.0
2 차가공	114	4.8	0-14	3.8
완 제 품	47	3.7	0-14	3.0
정 유				
1 차가공	9	1.6	0-4.9	2.5
2 차가공	6	1.3	0-4.6	2.0
완 제 품	45	7.9	0-38.2	9.8
고무제품				
1 차가공	2	0.8	0-1.5	1.1
2 차가공	21	1.7	0-3.3	1.1
완 제 품	58	3.1	0-27	5.8
철강제품				
1 차가공	10	1.0	0-5.7	2.1
2 차가공	363	2.9	0-7.6	1.1

자료: 일본의 WTO Trade Policy Review 준비용 내부자료, WT/TPR/S/32, PP166-168